

인천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3가단267262 판결 [계약금반환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변경 전 성명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태, 이연경

피고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본 담당변호사 김세현, 김혜성

변론 종결2024. 5. 8.

판결 선고2024. 5. 29.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923,8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24. 3.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원고는 2023 3.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일성차량운반 트럭'(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을 매매대금 2,3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800만 원은 19개월 동안 연 7%의 이자를 적용한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현물출자는 차량할부금 완납 후 등록하며, 차량할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 계약을 종료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 납부한 할부금을 차량 임대비로 귀속하여 반환하지 않기로 정하였다.
-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현물출자한 이 사건 화물차를 피고의 운송사업 경영을 위해 피고에게 위탁하고, 매월 관리비 1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납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화물 운송의뢰를 받으면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위수탁계약에 따른 할부매매대금, 관리비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한 운송수입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 원고는 2023.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계약 체결 전 알선 업체 담당자와 피고의 대표가 일정 수준의 급여를 보장한다는 구두상의 내용을 전달받고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급여의 수준이 그에 미치지 못하였고, 45일 후 지급되어야 할 급여도 거래처 결제 지연이라는 이유로 이월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구두로 해지를 통보한 2023. 5. 15.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이후 발생하는 차량 임대료 및 관리비, 주차비 등을 청구하지 말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23. 6.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를 사용해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각 계약은 사실상 일체로서 체결된 하나의 계약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종의 리스계약에 해당하여,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5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위수탁계약 전부에 관하여 지급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출을 800만 원 이상 보장하고, 평균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실제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매출은 최대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위수탁계약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착오가 있거나,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위수탁계약을 취소한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위수탁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한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위수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위수탁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른 2023년 4월분 미지급 운송수입금 3,923,886원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및 운송수입금 합계 8,923,8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

- 1)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고정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2)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각 별개로 체결된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5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되었다고 하여 위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 3)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른 운송수입금 지급은 해당 월 말일로부터 45일 뒤에 지급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운송수입금 산정내역을 보내주면 원고가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23. 5. 15.경 원고에게 3월 운송분 정산내역을, 2023. 6. 15.경 4월 운송분 정산내역 발송하였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이행기가 도래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른 운송수입금 지급을 지체한 것이 아니다.
- 4)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위수탁계약이 일체로 체결된 하나의 계약으로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차량 할부금 납부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른 운송수입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상 피고의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5)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른 운송수입금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지급을 최고하고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어서, 위 해지 통보는 민법 제544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이 없다.

6)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운송수입금은 2,491,400원인데, 원고가 2023. 4.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차량 할부금(월 1,003,595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차량 할부금 채권으로 위 운송수입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더 이상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위수탁계약의 내용과 의미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위수탁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점, ②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권을 가진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화물차를 피고에게 현물출자하여 운송사업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지입계약에 해당하는데, 아직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상태로서 그 계약의 내용이 실질과 일부 부합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현물출자는 차량할부금 완납 후 등록한다.'는 내용과, '차량할부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되면 기존 납부한 할부금은 차량임대비로 귀속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위 내용은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화물차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피고에 지입한 것과 같이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 점, ④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른 운송수입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차량할부금도 매월 공제하여 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위수탁계약은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유보된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지입차주와 같이 운송사업을 하는 것을 예정한 것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사실상 일체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취소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통상적인 지입계약의 경우 지입차주 매출은 지입차주가 운송한 업무에 비례해 지급받는 운송수입금이 대부분인 점, ② 피고와 같은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고정수익을 보장하는 경우는 다소 이례적인데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위수탁계약 어디에도 고정수익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 ③ 피고의 대표 또는 알선업자가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서 운송업무를 하는 경우의 매출에 관하여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를 영입함에 있어 통상적인 매출을 설명한 것에서 나아가 해당 매출을 고정수익으로 보장하겠다고거나,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서 고정수익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거나, 피고가 고정수익 지급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해지 여부

1) 이행지체로 인한 해지 주장 앞서 든 증거, 을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른 운송수입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피고가 해당 월의 말일로부터 45일 후에 해당 월의 정산내역을 제시하고, 그 정산내역에 따른 운송수입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위 지급시기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그 내용에 '45일 후 지급되어야 할 급여'라는 취지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23. 5. 24.경 원고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업무를 시작한 2023년 3월분 운송수입금 정산내역을 원고에게 제시하였는데, 원고가 그 무렵 운송수입금이 구두로 보장한 것보다 적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2023. 6. 15. 및 2023. 6. 20.경 2023년 4월분 운송수입금 정산내역 및 변경내역을 원고에게 제시하였는데, 원고는 그 무렵 내용증명을 통해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명시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해지 사유로 든 고정수익의 보장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한 해지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위수탁계약에 따라 차량할부금, 관리비 등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와 같이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운송수입금 지급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져 채무불이행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해지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불이행에 피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행위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의 파괴를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해지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계약금 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른 운송수입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3년 4월분 원고의 운송 매출은 5,334,632원이고, 공제해야 할 2023년 5월 및 6월분 관리비, 현장차고지 운영관리비, D협회비, E협회비, 6월 자동차세, 차량할부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2,491,44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운송수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23. 7. 이후 매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차량할부금 1,003,596원씩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 차량할부금 채권으로 위 운송수입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2023. 9. 13.자 준비서면이 2023. 9. 1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바, 2023. 7.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5. 8.까지 발생한 차량할부금의 액수 10,035,960원(=1,003,596원×2023. 7.부터 2024. 4.경까지 10개월)이 위 운송수입금의 액수를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운송수입금 채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상훈

1) 원고는 소장, 2024. 3. 11.자 준비서면 및 2024. 3.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2023년 4월분 매출 5,334,632원에서 각종 비용 2,843,192원 중 2023년 6월 자동차세 21,7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제한 미지급 운송수입금이 3,923,886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2023년 4월분 정산내역(갑 제2호증) 중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 5월 이후의 6월분 공제내역을 뺀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